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

제정 2011. 8. 24.

개정 2012. 5. 22.

개정 2015. 2. 13.

개정 2017. 4. 25.

개정 2018. 6. 19.

개정 2021. 12.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제8조의 표준외국어능력시험의 졸업요건 부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2009학년도 입학생 및 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학년도(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입학하여 수료한 자는 제5조 2 대체강좌(수료졸업영어)의 수료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 ① 각 학과(부)별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 점수(이하 “기준 점수”라 한다)는 세칙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세칙 [별표 2-1]을 적용한다.

② 표준외국어능력시험(“이하 TOEIC”)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은 TOEIC-SPEAKING, New TEPS, TOEFL iBT, TOEFL iTP, Opic이며, 기준 점수는 세칙 [별표 3]의 “주요 공인 영어 시험 간 성적 환산표”를 따른다.

③ 학생은 기준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졸업 대체 모의 TOEIC,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및 TOPIK 성적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기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학생·재입학생 : 신입학 전후

2. 편입학생 : 편입학 전후

제4조(영어능력 졸업인증 미취득자 처리) ① 제3조의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제5조의 영어능력인증대체강좌(이하 “대체강좌”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TOEIC(본교 언어교육원 졸업 대체 모의 TOEIC) 기준 470점 이상 취득

2. 제4조의2에 의한 언어교육원의 기초졸업영어 수료자

② 대체강좌를 이수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칙 제71조 제5항에 따라 수료로 처리한다.

제4조의2(대체강좌 신청 자격 미충족자 처리) ① 제4조 제1항 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4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함)은 언어교육원에서 개설 운영하는 ‘기초 졸업영어’를 수료할 경우 대체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기초졸업영어’의 수준은 대체강좌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고, 수강내용과 이수시간은 대체강좌와 같이 한다. 수료요건은 수강기간 3/4이상 출석에 평가시험의 평균 80/100점 이상으로 한다. 동 강좌의 개설·수업기간은 해당 대체강좌가 개설되는 계절수업의 수강신청 10일 전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③ 언어교육원에서는 ‘기초졸업영어’ 평가를 종료하는 즉시 수료자 명단을 교양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체강좌의 운영 및 수료요건) ① 대체강좌는 원활한 외국어 강사 수급 및 관리를 위해 교양교육원에서 운영한다.

② 대체강좌의 분반 기준은 30명 이상으로 편성하여 집중 지도하거나 “대학실용 영어” 수준으로 하며, 수강 기간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수강할 수 있는 계절수업으로만 운영한다.

③ 대체강좌의 수강과목명은 ‘일반졸업영어’로 하고, 수강내용은 영어로 일상생활 및 업무상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문법과 어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및 핵심 표현을 숙달시키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④ 수료요건은 수강기간 3/4 이상 출석에 평가시험의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의2(수료자 대상 대체강좌 운영) ① 수료자 대상 대체강좌는 개설 시기, 운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언어교육원에서 운영한다

② 대체강좌의 교과목명은 ‘종합졸업영어’로 하고, 수료자만 수강 가능하다.

③ ‘종합졸업영어’의 수강내용은 재학생 대체 강좌인 ‘일반졸업영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하며, 수료조건은 동일하게 운영한다.

④ 언어교육원에서는 ‘종합졸업영어’ 평가를 종료하는 즉시 이수자 명단을 **교육혁신과** 및 해당대학 행정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절차) ①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는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부)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졸업사정 결과보고일 3주전(전기졸업: 1월 10일 이전, 후기졸업: 7월 10일 이전)까지 졸업인증 관련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부)장은 PIP/학생지원시스템의 영어능력 졸업요건 취득현황 데이터 관리항목에 해당사항을 입력·관리하고, 졸업학기 졸업사정 결과보고일 7일 전까지 [별지 제 1호 서식]의 ‘영어능력 졸업요건 충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과대학별 학장은 영어능력 졸업요건 충족 결과를 반영하여 졸업사정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표기) 각 학과(부)별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성적증명서 하단에 ‘영어인증졸업’을 표기하고, 대체과목 이수 등을 통한 경우는 인증 표기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 8.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외국인 유학생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 능력 졸업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영어능력 졸업요건 충족 유형별 구비서류

유형	구비서류
영어 졸업인증 요건 충족자 (인증졸업 예정자)	○ 영어(한국어) 졸업요건 인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u>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졸업 대체 모의 TOEIC (성적 확인서 포함),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및 TOPIK 성적표 사본</u>
영어 졸업인증 요건 미충족자 중 대체강좌 이수자 (일반졸업 예정자)	○ 졸업 인정원(별지 제3호 서식) ○ 성적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

영어능력 졸업요건 충족 결과보고서

학과(부)장 (인)

학과(부) 또는 전공별	학번	성명	TOEIC		충족	미충족	판정[학과(부)장인]
			기준점수*	취득점수			

* 세칙 [별표 2]의 학과(부)별 입학년도별 TOEIC 기준 점수, 단 외국인 유학생은 세칙 [별표 2-1]의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시험 점수

※ TOEIC 외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는 세칙 [별표 3]의 “주요 공인영어시험 간 성적환산표” 적용

[별지 제2호 서식]

영어(한국어) 졸업요건 인증 신청서

대학 학과			
성명		학번	
생년월일			
취득점수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에 의하여 영어(한국어) 졸업 요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첨부 :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졸업 대체 모의 TOEIC(성적 확인서 포함),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및 TOPIK 성적표 1부			
부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졸업인정원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인)		
과목명	일반졸업영어	수료점수		담당교수			
○ 수강기간(계절학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졸업인정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붙임 : 성적증명서 1부 부산대학교 총장 귀하							